

5. 연 락 처

가. 문화재청

-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: 전화 042-481-4839/팩스 042-481-4849
- 주 소 : (우 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cha.go.kr>

나. 지방자치단체

-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: 전화 02-2133-2627/팩스 02-768-8873
- 주소(우 04515) 서울 중구 덕수궁길15(서소문동37) 시청별관 1동 5층
- 송파구 역사문화재과 : 02-2147-2008/팩스 02-2147-3874
- 주소(우 05552)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본관 6층

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 지정 지번별 면적조사

연번	소재지	지번	지목	지번 면적 (㎡)	지정 면적 (㎡)	소 유 자	
						성명	주소
1	서울시 송파구 풍납동	129-20	도로	13	13	차연교	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9-17 102호
2	서울시 송파구 풍납동	131-58	대	102	102	노금희	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31-58

●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0-453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」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,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7일

국립환경과학원장

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」 고시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,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
 ※ 화학물질명(CAS No. 포함)이 자료보호 신청된 경우에는 총칭명으로 고시

2. 주요내용

가. 등록통지된 화학물질 심사완료된 결과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

- 별표 제2호(기존화학물질) 심사완료물질('20. 1.~3.)

나.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(CAS No.), 유독물질 해당여부, 주요 유해성, 분류·표시 등 고시

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(위해성평가연구과, 전화 032-560-7219/7194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(www.nier.go.kr>법령정보>행정예고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●국민체육진흥공단공고제2020-10호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자격취소 처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10월 27일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공시송달

1. 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2. 법적근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

처분의 제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	
당사자	성 명	김 ○ (88년생)
	주 소	강원도 동해시 (이하 생략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춘천강릉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(2018.12.28.)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테니스, 150804)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	
처분의 제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	
당사자	성 명	정 ○ 원 (83년생)
	주 소	경기도 성남시 (이하 생략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수원성남지원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음. (2017.06.29.)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85881), 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5736)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	
처분의 제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	
당사자	성 명	최 ○ 영 (73년생)
	주 소	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생략)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. (2019.01.31.)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34943)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	